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1조중 "출장소장 및 소방서장"을 "증평출장소장,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장 및 소방서장"으로 한다.

제2조 제1항중 단서조항을 삭제하며, 제2항중 "별표2"를 "별표4"로 하여 제4항으로 하고,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②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"별표2" 와 같다

③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"별표3"과 같다

"별표1" 권한위임사무중 방호과 소관사무는 삭제한다.

제5조중 "출장소장 소방서장은" 를 "증평출장소장,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장 및 소방서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